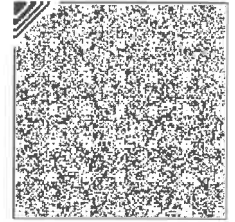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보험상품 안내 및 가입 독려 요청

1. 의료기관정책과-7134(2025. 10. 29.)호와 관련됩니다.
2.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보험상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각 단체에서는 회원 의료기관에 배상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 추진체계

- 위탁기관: 보건복지부
- 수탁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조사업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지원대상: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 전문의: 분만 수행 산부인과(병·의원급), 소아 외과계열*(병원급)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
- 전공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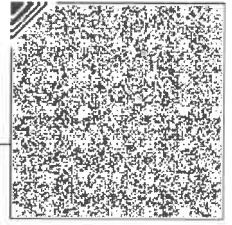
○ 지원내용: 배상보험료의 일부 국가 지원

- 전문의: 고액 배상 보험(2억 원 초과하는 15억 원 보장, 최대 17억 원의 배상액 대비)의 보험료 중 국가가 150만 원 지원(의료기관 부담금 20만 원)
- 전공의: 전공의 단체 보험(3천만 원 초과하는 3억 원 보장, 최대 3억 3천만 원의 배상액 대비)의 보험료 중 국가가 25만 원 지원(의료기관 부담금 17만 원)

※ 단,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보장한도 최소 3억 원, 보험효력이 24년 12월부터 25년 11월 중 개시된 보험)에는 동일 금액(25만 원)의 보험료 환급 지원 선택 가능

○ 신청기간: 2025. 11. 26.(수) ~ 2025. 12. 12.(금)

※ 단,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대한 환급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11.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환급 신청 가능



붙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추가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인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대한산부인과 의사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외과 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주무관 박지훈 행정사무관 김수영 의료기관정책과 전결 2025. 11. 27.
장 신현두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7839 (2025. 11. 2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의료기관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78 팩스번호 044-202-3926 / hooni345@korea.kr / 비공개(5)

2025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추가 안내

1 개 요

□ (목적)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등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으로 소송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지원내용) 필수의료 배상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1년, 1회)

- 전문의 1인당 150만원(신규가입), 레지던트 1인당 25만원 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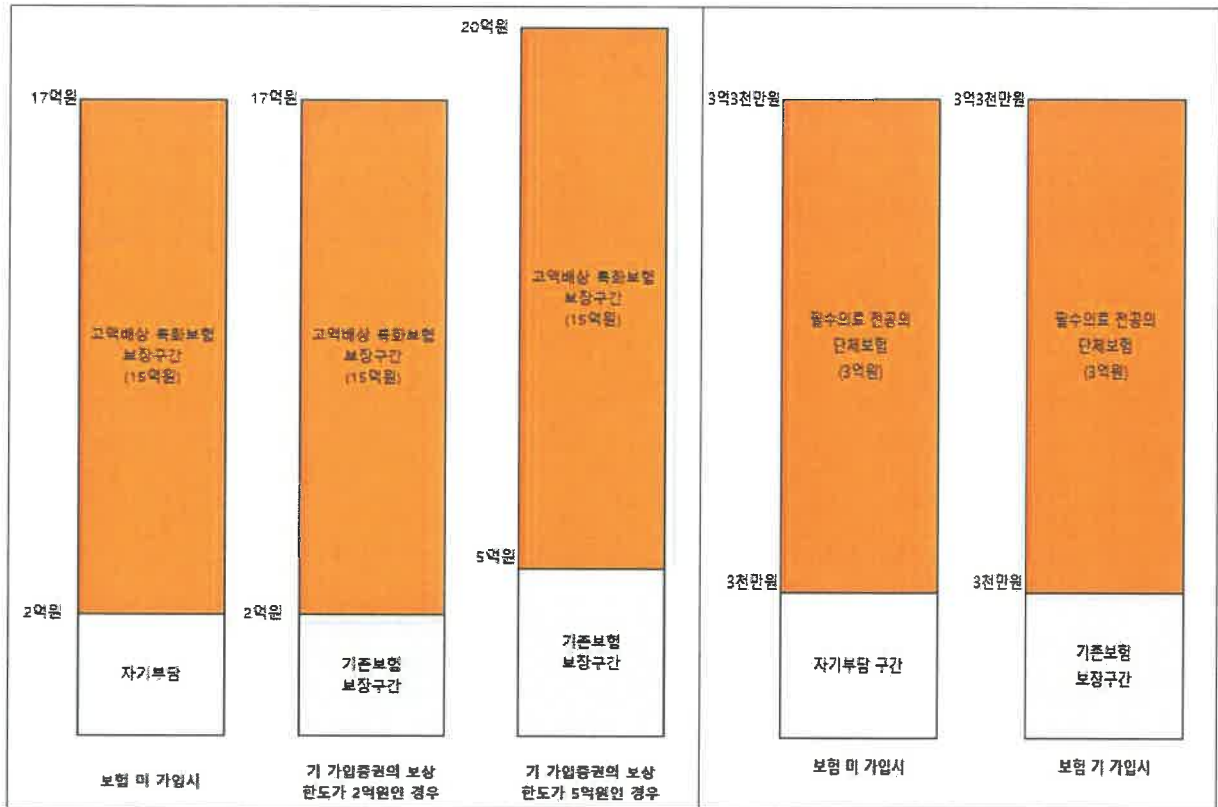
전공의는 ① 신규가입 전공의 단체보험료 지원 또는 ② 기존가입 배상보험료 환급 중 (택1)

2 [신규가입]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단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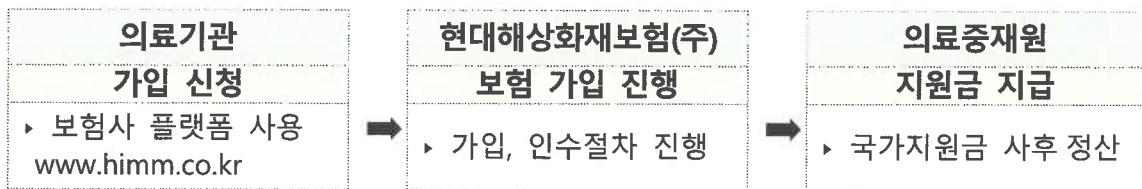
구분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지원대상	① 2024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②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청소년 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지원내용	인당 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인당 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보험료	인당 <u>1,700,000원</u> 정부지원금 <u>1,500,000원</u> 본인부담금 <u>200,000원</u>	인당 <u>420,000원</u> 정부지원금 <u>250,000원</u> 본인부담금 <u>170,000원</u>
보장내역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2억 원 초과 15억 원 까지 보장 (청구당/연간보상총액)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3천만 원 초과 3억 원 까지 보장 (청구당/연간보상총액)
기존보험과의관계*	예) 기존보험 보상한도액 2억 원인 경우, 2억 원을 초과하는 15억원, 합산 기준 17억 원을 보장 *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5억 원까지 보장	예) 기존보험 보상한도액 3천만 원인 경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3억 원, 합산기준 3억 3천만 원을 보장 *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3억 원까지 보장

구분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기타 보험조건	○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 최초 보험개시일로 해당일자 이후에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청구에 대해 보상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 인정, 신규가입의 경우, 2025년 10월 27일로 소급 적용) ○ 자동보고연장기간(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미갱신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된 사고에 대해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보상함	

※ 기존보험과의 관계 예시



□ (지원절차) 의료기관이 해당 보험사에 가입신청



□ (신규가입 신청기간) '25. 11. 26.(수) 부터 '25.12.12.(금) 까지

< 사업 관련 담당자 및 문의처 >

○ (대표전화)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콜센터 1551-7215

○ (홈페이지) www.himm.co.kr